



## 축산업의 경영관리 (10)

민 경 래

푸리나 코리아 경영지도부장

### 2) 손익법(損益法)

지난회에서 손익계산의 방법으로서는 재산법과 손익법의 두가지가 있다는점을 설명한바 있거니와 손익산출 방법의 하나인 손익법이란 회계기간동안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며 손익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회계기간동안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일일이 기록하였다가 기말(期末)에 가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집계하여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고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손익법에 의한 손익산출방법을 등식(等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총수익} - \text{총비용} = \text{순이익}$$

위의 등식을 고치면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등식을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한다.

총비용 + 순손익 = 총수익 ... 손익계산서 등식  
즉 회계기간 동안에 들어온 총수익에서 회계기간 동안에 지출된 총비용 (이 총비용에는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이라도 비용으로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등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을 빼고 남은 것이 흑자(黑字)로 나타날 때는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적자(赤字)로 나타났을 때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2)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총수익 (A)	총비용 (B)	총수익 (A')	총비용 (B')
순이익 (C)		손실 (C')	

위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많을 때는 그림 중의 (C)부분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반대로 그림 (2)의 경우와 같이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많을 때는 그림 중의 (C')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손익법이란 이상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손익계산을 행하는 기간동안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방법임으로 정확한 손

익계산을 하기 위하여서는 회계기간중에 발생한 수익과비용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기록 정리하여야함으로 실무상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기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당기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장래의 기업의 운영방침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재산법에 의한 손익계산이 계산절차상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손익발생의 원인이 불분명(不分明)한 단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계속운영과 발전을 위하여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영에 의한 보다 높은 이익달성을 위해서도 절차상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단점이 있더라도 손익법에 의한 손익계산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규모의 기업이 아니고 확실한 사업일 수록 재산법에 의한 손익계산보다는 손익법에 의한 손익계산을 행하여 경영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사업운동을 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또한 현행 세법상 축산업은 영업세법 1조에 규정하고있는 영업에 속해있지 않음으로 영업세는 부과대상이 안되며 소득세는 소득세법 8조 2항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고있으나,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개정될 세법의 개정여하에 따라 앞으로의 감면기간이 결정될 것이다. 만일 앞으로 개정될 세법에서 감면기간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세가 100%감면될 것이고 1976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세의 50%만 감면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의 개정골자가 현재의 소득원천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분류소득과세제도(分類所得課稅制度)에서 소득원천의 구별없이 동일인의 전체소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과세제도(綜合所得課稅制度)로 개정될 듯하다. 즉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 분류과세소득(分類課稅所得)별로 각분류과세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동일인의 연간 총소득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인의 총소득액에 대해서 분류과세소득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않고 전체소득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 한가지만을 적용하여 누진율로서 과세함으로써 과세과정을 단순화(單純化)시키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고 고소득층에 중과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켜 간접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성과도 달성코져하는 것이 금번 세법개정의 주요한 정책적목적으로 사려된다.

현행세법상으로 축산업으로부터의 소득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감면되고 있으나 만일 축산업을 하는자가 축산업이외의 사업도 경영하는 경우 총소득액이 연간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축산업으로부터의 소득액과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다른사업으로부터의 소득액을 구분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이때 축산업으로부터의 소득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역시 손익법에 의한 손익산출을 하여야만 세무당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축산업이 세법상 감면대상이라는 점만 생각하고 기록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축산업이 감면대상이긴 하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동일인이 다른사업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됨으로 거래의 기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단지 세법상의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사업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거래의 기록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구미선진국 국민들이 오늘날 높은 국민소득으로 보다 편리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의 하나로서 그들의 조상때부터 낭비가 없고 근면하게 일해왔으며 사업운영도 숫자적 기록에 의한 합리적 사업운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구미선진국 국민들에게는 거래의 숫자적 기록이란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무상 문제를 생각하며 돈을 받고서도 영수증 써주기를 꺼려하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주고서도 영수증 달라는 말을 하지않든가 또는 영수증이 필요하면서도 영수증 써달

라는 말을 하기를 주저하는 수가 많다.

실제로 필자가 출장을 갔을때 모도시에서 동료직원과함께 아침식사를 하기위해서 모음식점에 간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이 식사가 끝난후 식사대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더니 주인 이야기가 영수증 용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히 영수증 용지가 없으면 다른종이에라도 써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주인의 말투가 불손한 것을 생각한다면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꼭참고 나온 일이 있다. 기경우 돈주고 식사하고 그대금의 영수증 달라고 한것이 결코 무리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주인말따마나 재수없는 일이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거래에 대한 숫자적 습관이 생활화되어있지 않다는점이다. 영수증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이 조그마한 일인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거래의 정확한 기록은 정당한 영수증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는 것임으로 결코 조그마한 일이라고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1973년 11월초 국세청장의 담화가 있는 이후부터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표준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품을 사고팔때나 금전을 주고 받을때 세무당국이 요구하고있는 표준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하여야겠다.

다음으로 손익법에 의한 손익계산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1) 재고조사의 실시

회계기간이 끝나는날 즉 손익계산기간의 마지막날의 거래가 끝난후 농장의 모든 실재자산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즉 농장자산중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가치와 실재가치가 상이(相異)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파손된 것도 있을 것이고 분실된 것도 있을 것이며 약품 또는 사료, 곡물등은 부패 또는 변질된 것도 있을 것임으로 이 모든 농장의 자산에 대해서 마감당일 현재의 실재가치를 조사하여 재고조사료를 작성한 다음, 장부상 기록되어 있는 가치와 실재가치에 차이

가 있을때는 장부상에 그 차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2) 모든 계정의 마감

재고조사에 의하여 발견된 자산의 장부상가치와 실재가치의 차이가 수정된다음, 수익과 비용에 관계되는 모든 계정을 마감한다.

### 3)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의 마감

대차대조표상의 모든 계정에 대해서 보조부의 기록을 정리하여 전기한 다음 모든 계정을 마감한다.

### 4) 합계잔액 시산표의 작성

회계기간동안에 발생한 모든 거래의 기록이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는가의 가부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시산표(試算表)라는 것이 있으며 시산표에는,

(1) 합계시산표(合計試算表)

(2) 잔액시산표(殘額試算表)

(3)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등의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중 흔히 쓰이는 것이 합계잔액 시산표로서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각 계정의 차변 및 대변의 합계액과 잔액을 동시에 모은 것으로서 전에 설명한 바 있는 대차평균의원리에 의하여 차변 및 대변의 합계액과 잔액의 합계액은 반드시 일치하게되며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장의 각계정의 기록이 정확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줌으로서 회계학상 자체검증능력(自體檢證能力)을 갖고 있는 것이다.

### 5) 손익계산서의 작성

다음으로 할일은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변 및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 손익계산서 양식의 각계정에 원장의 각계정금액을 기입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 6) 대차대조표의 작성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면 다음으로 할일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일이다. 대차대조표의 작성역시 원장의 대차대조표 각계정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양식에 기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상으로서 손익계산은 끝나며 손익계산이 끝난다음에 할일은,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한 연유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다음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영분석(經營分析)을 행하는 일이다.